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

2010. 3.

환 경 부

목 차

I. 일반사항	1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II. 서식지 조사 및 관리기준	1
1. 서식지 조사	
2. 서식지 관리기준	
III. 주요 서식지별 관리방법	3
1. 일반사항	
2. 세부 관리방법	
IV. 행정사항	5
별표(서식지 기준 관리대상지역 점수 산출방식)	
별지 제1호 서식(유해 집비둘기 피해상황 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참고 1(유해 집비둘기 관리방법)	
참고 2(유해 집비둘기 포획방법)	
참고 3(서식지 기준 관리대상지역 점수산출예)	
참고 4(먹이주기금지 홍보문안)	
참고 5(외국의 관리사례)	

I.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집비둘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및 생활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유해 집비둘기”라 함은 법 제2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한다.

나.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시민의 휴식 등을 위해 조성된 모든 공원을 포함한다.

나. “포획도구”라 함은 총기류, 덫 및 그물 등을 말한다.

II. 서식지 조사 및 관리기준

1. 서식지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등(국립·도립공원은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 집비둘기 서식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가. 서식지 유형(공원, 주택가, 문화재, 곡물집하장 등)

나. 서식지별 개체수, 번식유무 및 주요 먹이 공급원 등

다. 피해유형 및 민원발생 정도

라. 그 밖에 유해 집비둘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서식지 관리기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경우에도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거나 관리단계를 강화할 수 있다.

가. 개체수 기준

개체수 (마리)	관리단계	관리방법
50~100	I 단계	개체수 모니터링
100~500	II 단계	개체수 모니터링+피해상황 모니터링
500 초과	III 단계	개체수 모니터링+피해상황 모니터링+피해복구

나. 서식지 기준

점수범위*	관리단계	관리방법
0 ~ 35	I 단계	개체수 모니터링
36 ~ 70	II 단계	개체수 모니터링+피해상황 모니터링
71 ~ 100	III 단계	개체수 모니터링+피해상황 모니터링+피해복구

※ 별표에 따라 서식지·피해유형 및 먹이공급원 등 항목별 점수 산출

Ⅲ. 주요 서식지별 관리방법

1. 일반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식지 유형, 개체수 및 피해유형 등에 따른 관리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하거나 시설물(구조물) 관리자 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나. 포획은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상황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 관리방법

가. 공원지역

-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금지 홍보·제도 강화
 - 집비둘기 밀집지역 등에 먹이제공금지 안내간판 설치 및 현수막 등 부착(예시 : 참고 4)
- 공원 내 매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및 주변지역 청소 등을 통한 먹을거리 제거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 공원 내 동상, 조각상 등 시설물에 대한 조류 기피제* 살포·코팅 등은 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조치

* 집비둘기가 싫어하는 메틸안트라닐레이트(Methyl anthranilate, 포도에서 추출한 식물성물질)를 사용한 약품

- 필요시 덫·그물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되, 포획한 집비둘기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처리

나. 주택가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 필요시 선반, 처마 등에 버드스파이크, 버드와이어, 버드슬로프 등 설치 및 조류 기피제 등 사용
- 포획은 공원에서의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다. 철도역사, 터미널, 공항 등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 주변 상가, 음식점 등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및 주변지역 청소 등을 통한 먹을거리 제거
- 구조물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시 버드스파이크 및 버드넷 설치 등 물리적 퇴치방법 사용
- 포획은 공원에서의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라. 문화재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 주변지역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및 청소 등을 통한 먹을거리 제거
- 필요시 조류 기피제 살포 및 처마 밑 접근차단을 위한 버드넷 등 보호막 설치

마. 곡물 집하장 및 창고 등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 낙곡(落穀)방지 및 신속한 낙곡 처리
- 필요시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포획한 집비둘기는 공원에서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바. 교량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 하천변 산책로 및 둔치공원 등에 먹이제공금지 안내간판 등 설치
- 필요시 버드넷, 버드스파이크 등 설치

사. 그 밖의 지역 및 시설물 등

- 알·둥지 제거 및 포획 등 개체수 조절, 예방·퇴치 구조물 설치 등 해당지역 및 시설물 특성에 적합한 방식 적용

IV. 행정사항

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집비둘기 먹이제공금지를 위한 홍보·계도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취합·작성하여 매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해 집비둘기 포획 관련사항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지침(2013.7, 환경부 지침)」을 준용한다.

<별 표>

서식지 기준 관리대상지역 점수 산출방식

관리대상지역 선정기준 항목 체크리스트		
항 목	세부 항목	점수
서식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주택가(5) <input type="checkbox"/> 농경지(5) <input type="checkbox"/> 공원지역(15) <input type="checkbox"/> 곡물집하장 등(25) <input type="checkbox"/> 교량(5) <input type="checkbox"/> 철도역사 등(10) <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20) <input type="checkbox"/> 문화재(30)	
번식둥지 유무	<input type="checkbox"/> 없음(0) <input type="checkbox"/> 5개 미만(5) <input type="checkbox"/> 5-10(10) <input type="checkbox"/> 10개 초과(15)	
피해유형	<input type="checkbox"/> 심미적 피해(5) <input type="checkbox"/> 먹이섭취로 인한 경제적 피해(10) <input type="checkbox"/> 배설물 및 깃털에 의한 피해(15)	
먹이 공급원	<input type="checkbox"/> 없음(0) <input type="checkbox"/> 자연적 제공(5) <input type="checkbox"/> 음식물쓰레기(10) <input type="checkbox"/> 인위적 제공(15)	
행동유형	<input type="checkbox"/> 휴식 및 대기(5) <input type="checkbox"/> 취식(10)	
민원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15) <input type="checkbox"/> 무(0)	
합계 점수 :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항목의 점수임.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선택 항목 중 해당 하는 것에 V 표기를 하고 해당하는 점수를 우측 점수란에 기입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표 우측하단의 합계점수에 기입하고 점수 기준 표에 해당하는 관리 단계로 지정 - 선택항목의 중복이 발생할 경우 높은 점수의 항목을 표기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집비둘기 피해상황 조사서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장소 유형	개체수	행동유형
서식지 개황	※ 사진 첨부			
피해상황	※ 사진 첨부			
기타 특이사항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보고

구 분	개체수	피해유형	주요 먹이 공급원	민원발생 건수	조치내역	기 타 (특이사항)
계						
주택가						
농경지						
공원지역						
곡물집하장 등						
교량						
철도역사 등						
체육시설						
문화재						
기 타						

※ 별표 1의 '서식지 기준 관리대상지역 점수 산출방식'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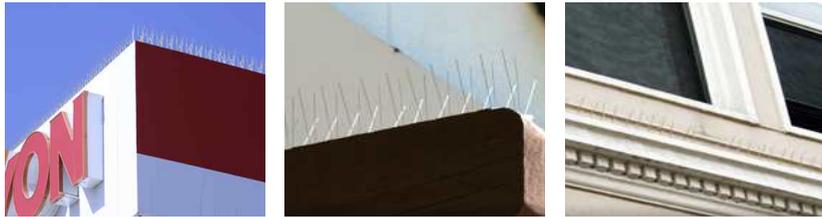
〈참고 1〉

유해 집비둘기 관리방법

방법(도구)	장 점	단 점
먹이 조절	- 해당지역 집비둘기 개체군 다수 혹은 전체에 영향 초래 - 간섭 최소화로 인도적인 조치 - 인력·비용 측면에서 유리	- 먹이제공 금지를 위한 홍보·계도 필요
화학 불임제	- 불임된 개체는 개체군내에서 경쟁·짝짓기를 통해 개체군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생태계 교란 가능성 - 많은 시간·비용 소요
살생	- 신속한 조절효과 발생	-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효과적 - 동물학대 여론 우려 - 총기사용으로 잠재적 위험성 내재
포획	- 신속한 조절효과 발생	-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 - 포획물 처리방법 선정 필요
둥지 및 알 제거	- 번식억제	- 많은 인력·비용 소요
포식자(매) 이용	-	- 생태계 교란 가능성 - 사람·애완동물 등에 공격할 가능성 잠재
모조 알 이용	- 번식억제	- 많은 인력·비용 소요
건축물 구조변경을 통한 예방	- 근본적인 접근·이용 차단	- 설계단계에서 고려 필요 - 구조 변경시 많은 비용 소요
버드 스파이크 ¹⁾	- 수명이 길고 설치용이 - 다양한 형태·크기로 설치 - 설치비용 저가	- 미관저해

방법(도구)	장 점	단 점
그물 ²⁾	- 설치용이 및 다양한 구조에 적용 가능 - 설치비용 저가 및 반영구적 사용	- 미관저해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필요
버드와이어 ³⁾	- 설치용이 및 반영구적 사용 - 버드스파이크에 비해 미관양호	- 소형 조류에 효과미흡
버드슬로프 ⁴⁾	- 설치용이 및 반영구적 사용 - 유지·관리용이	- 활용범위 협소
버드 스파이크 ⁵⁾	- 설치용이 및 반영구적 사용	- 효율성 저하
태양전지 퇴치기계 ⁶⁾	- 친환경적 방법이며, 지속적 구동으로 타 장치에 비해 효과적	- 고비용 -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버드미스트 ⁷⁾	- 규모가 크고 개방된 공간 등에 설치용이	- 고비용 -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전기충격 조류퇴치 시스템 ⁸⁾	- 동시 퇴치기능으로 고효율성 - 미관양호, 다양한 구조물에 설치 가능	- 고비용 -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조류기피제 ⁹⁾	- 특정지역에 비둘기 접근 제한 - 조류·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성분으로 저렴한 비용 - 미관저해 방지, 간편 시공 가능	- 시간경과에 따라 효과감소 - 지속적인 시공 필요
초음파 및 음향 퇴치기 ¹⁰⁾	- 설치·사용용이 및 반영구적 사용 - 개방된 넓은 공간에 효과적	- 고비용 및 기계적 고장 유의 - 사람의 정신적 피해유발 우려 - 소리에 적응시 효과 감소
시각적 장치 ¹¹⁾	- 설치비 저가 및 설치용이	- 미관저해 및 지속적 성과도출 곤란
적외선센서 이용 살수장치 ¹²⁾	- 설치·사용용이 및 친환경적 - 개방된 지역에 유리	- 고비용 - 이용범위 제한

1) 버드스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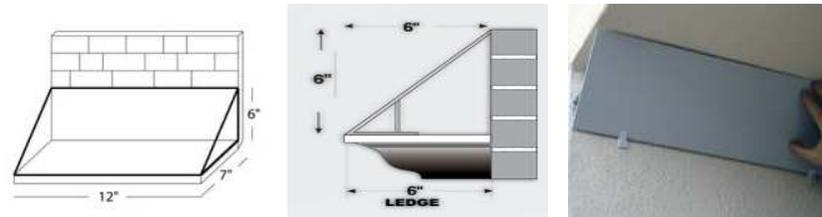
2) 그물



3) 버드와이어



4) 버드슬로프



5) 버드스파이더



6) 태양전지 퇴치기계



7) 버드미스트



8) 전기충격 조류 퇴치 시스템



9) 조류기피제



10) 음향퇴치기



11) 각종 시각적 장치



12) 적외선센서 살수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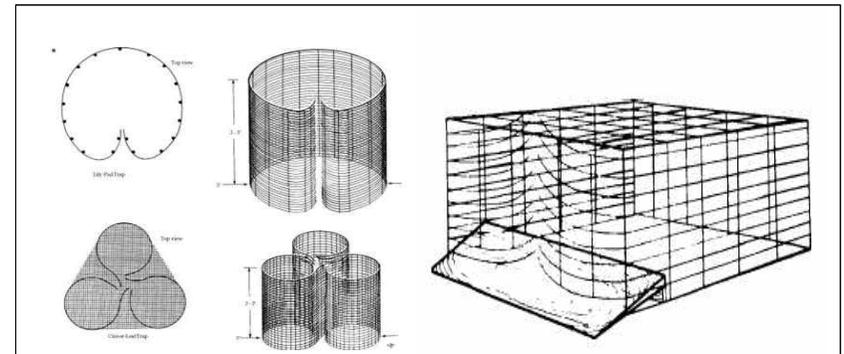


<참고 2>

유해 집비들기 포획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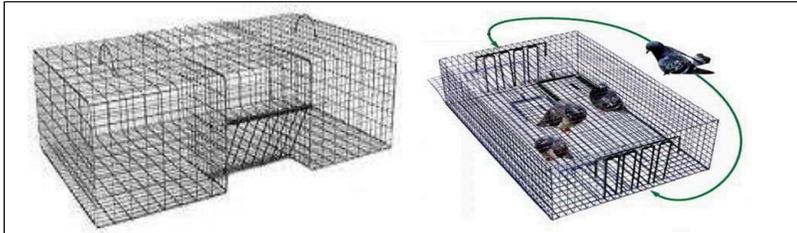
방법(도구)	장 점	단 점
생포용 덫(트랩) ¹⁾	- 다회용으로 사용용이	- 초기 제작비용 소요 및 도난 우려
캐넌그물 ²⁾	- 포획공간 등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대량포획 가능 * 서식밀도가 높은 곳에 효과적 - 반영구적 사용	- 초기 제작비용 소요
충기류	- 휴대용이 및 비용 저렴	- 충기사용에 따른 위험성 잠재 - 포획지역 제한

1-1) 생포용 덫(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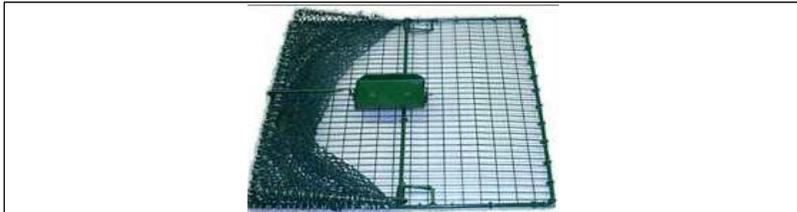
원리: 출입구의 창살이 안쪽으로 향한 형태로 집비들이 쉽게 들어갈 수 는 있으나 나가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음

1-2) 생포용 덫(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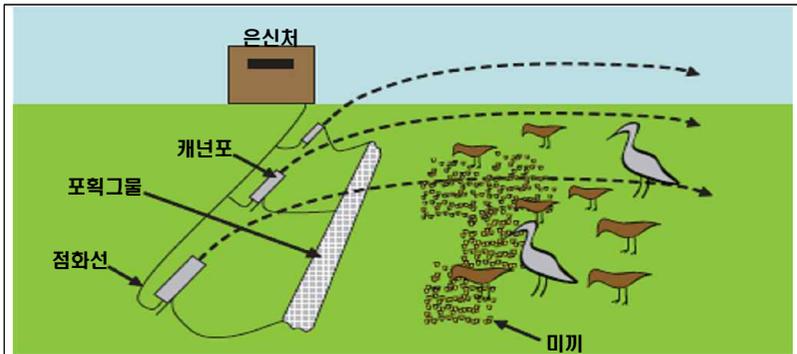
원리: 출입구에 설치된 여러 개의 세로형 창살은 스프링으로 고정되어 집비둘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음

1-3) 생포용 덫(트랩)



원리: 중심에 위치한 모이판에 압력이 가해지면 스프링으로 고정된 그물이 덮어 포획함

2) 캐넌 그물



원리: 캐넌포에 그물을 연결하여 지면에 설치하고, 미끼로 유인하여 모여들게 한 후 캐넌포를 발사하여 포획

<참고 3>

서식지 기준 관리대상지역 점수산출(예시)

관리지역 선정 기준 항목 체크리스트		
항 목	세부 항목	점수
서식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주택(5) <input type="checkbox"/> 농경지역(5)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15) <input type="checkbox"/> 곡물집하장(25)	15
	<input type="checkbox"/> 교량(5) <input type="checkbox"/> 철도역사(10) <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20) <input type="checkbox"/> 문화재(30)	
번식동지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0) <input type="checkbox"/> 5개미만(5) <input type="checkbox"/> 5-10(10) <input type="checkbox"/> 10개 초과(15)	0
피해유형	<input type="checkbox"/> 심미적 피해 (5) <input type="checkbox"/> 먹이섭취로 인한 경제적 피해(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설물 및 깃털에 의한 피해(15)	15
먹이 공급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자연적 제공 (5) <input type="checkbox"/> 음식물쓰레기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위적 제공 (15)	15
행동유형	<input type="checkbox"/> 휴식 및 대기(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식(10)	10
민원발생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15) <input type="checkbox"/> 무(0)	15
합계 점수		70
-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항목의 점수임.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선택 항목 중 해당 하는 것에 V 표기를 하고 해당하는 점수를 우측 점수란에 기입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표 우측하단의 합계점수에 기입하고 점수기준 표에 해당하는 관리단계로 지정 - 선택항목 중복발생시 높은 점수의 항목 표기 예) 문화재인 동시에 공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 서식지유형을 문화재로 분류		

※ 합계 점수가 70점이므로 II단계로 분류, 개체수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후 서식지별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

<참고 4>

떡이주기금지 홍보문안(예시)

<홍보문안 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

지역	홍보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위스 바젤	
홍콩	

<참고 5>

외국의 집비둘기 관리사례

국가명	관리방법	비고
영국	- 로봇매 설치 - 먹이제공 및 판매행위금지 * 위반시 벌금부과(50파운드)	
스위스	- 먹이제공금지 - 번식방지를 위해 비둘기집의 알을 모조 알로 교체	
벨기에	- 그물이용 포획 후 불임시술 - 그물 및 충격용 전선 등 물리적 방법으로 건물 보호	
캐나다	- 천적인 매 사육·방사 - 공포탄 사용	
독일	- 덫이용 포획	
이탈리아	- 먹이제공 및 판매행위금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전통행위(결혼식 후 광장에 쌀을 뿌리는 풍습) 금지 고려 중
호주	- 먹이제공행위금지 - 번식방지를 위해 비둘기집의 알을 모조 알로 교체 - 덫 이용 포획 및 알 제거	
프랑스	- 포획 및 사살 - 부화방해 - 먹이제공자 벌금 부과	
미국	- 불임약 함유 사료 제공 - 먹이제공자 벌금부과(45~300달러)	